

# 대부보증 표준약관



공정거래위원회  
FAIR TRADE COMMISSION

표준약관 제10061호  
(2014. 9. 19. 개정)

여신회사는 채무자·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대부거래계약서와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

- ★ 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★ 특히, 연대보증은 본 계약서 제1조에서 약정한 “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” 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.(별지 “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”참조)

2018년 07월 20일

여신회사 상 호 주식회사 바른클라우드대부  
대부업 등록번호 2016-서울강남-0316  
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28 아비스타빌딩 10층  
전 화 번 호 02-529-7967

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

성 명 대정건(주)

생년월일(성별)

주 소 내시 연영자 동업자 81길 17, 2층

전화번호

보증인(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채무자가 주식회사 바른클라우드대부(이하 “여신회사”라 한다)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(연대보증인은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),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채무자가 여신회사에 제출한 다음 제1조에 표시된 피보증채무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,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.